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4년 11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가.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대한 사무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법’)로 이관 시행(2025. 1. 1.)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나. 법령에 따라 구성하는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역학조사 실시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 라.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 마.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의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¹⁾에 따라 ‘건강영향 조사의 청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 반’의 구성·운영을 통해 환경성질환 및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건강 피해 역학조사를 하도록 적정히 규정함.
- 또한,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려는 것은 행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나. 조례의 법 적합성

-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된 사항과 일치되게 정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타당히 마련함.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25. 1. 1.시행)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

1)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중 략- ②~⑦(생 략)
→ 삭제 <2024. 3. 19.> [시행일 : 2025. 1. 1.]

구제위원회」로 이관²⁾됨으로 삭제 조치

- 위임 사무³⁾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으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신설 조치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24. 9. 13.) 등에는 존속이 필요하나 목적과 기능적으로 운영이 드문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한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경우 위원 위촉(’22. 6월) 이후 환경보건계획 검토 및 의견수렴(서면 1, 대면 1) 이외 지금까지 개최 상황이 없음으로 비상설화 요건이 해당된다 볼 수 있음.
 - 지역환경보건의 실무에는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타당히 규정함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환경보전법」의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을 준용하여 규정함.

2) 제3장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3)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관한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 규정함.
- 안 제7조는 도지사의 역학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함.
- 안 제8조는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충청북도의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

다.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전부개정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함.
- 다만, 제4조(위원회 구성) 제3항의 위원의 위촉·임명은 경우에 따라 도민의 권리 제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조례안 예고('24. 10. 14.~11. 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6. 검토의견

- 법리적 측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개정과 일치되게 정비하였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에 따라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정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강구하였음.
- 또한,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적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하였다고 사료됨.

○ 다만, 충청북도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⁴⁾」로 규정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는 민주·투명·효율·공정성 등을 향상하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충청북도환경보전위원회’ 또한 이에 부합되도록 아래 사항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 환경보전위원회 〉

☞ 제4조(위원회 구성) 제3항 다음 각 호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인’ 포함 여부

현 행	개 정 안
1. <u>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인</u> 2. 환경보전 전문가 3. 환경보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환경보전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환경보전 전문가 2. 환경보전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3. 환경경보전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3조(기본원칙)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원회를 도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